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가단53481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홍성필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235,236원 및 그 중 34,235,128원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여 동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20. 4. 28.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25. 4. 28.까지,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망인은 신용보증서를 C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망인은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하여 2022. 8. 30.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11. 8. C은행에 34,729,968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이후 494,8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일 기준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34,235,128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 108원이다.

4) 망인은 2022. 8. 22. 사망하였고, D과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D은 2022. 11. 15. 인천가정법원에서 부친지원 상속 포기 심판을 받았고(2022느단10688호), 피고는 2022. 11. 24. 인천가정법원 부친지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2022느단1072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고, 나아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과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34,235,236원 및 그 중 구상금 34,235,12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1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23. 5. 19.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근